

「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조례에 규정된 새마을운동조직을 현행화·재규정하고 새마을사업 위탁 조직을 재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시대에 부응하고,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새마을운동조직 현행화 및 재규정 (안 제2조)
- 새마을사업 위탁 조직 재규정 (안 제4조)
- 인용 제명 변경 반영 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새마을운동조직을 현행화·재규정하고 새마을사업 위탁 조직을 재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새마을운동조직의 현행화 및 재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새로 포함된 ‘구미시청년 새마을연대’ 및 ‘박정희새마을대학원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